

④ 공단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공단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단 사정으로 상단광고면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②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양도한 때
- ③ 사용허가조건을 위배하거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킨 경우
- ④ 지정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조건의 변경)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사용자는 상호협의 하에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공단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단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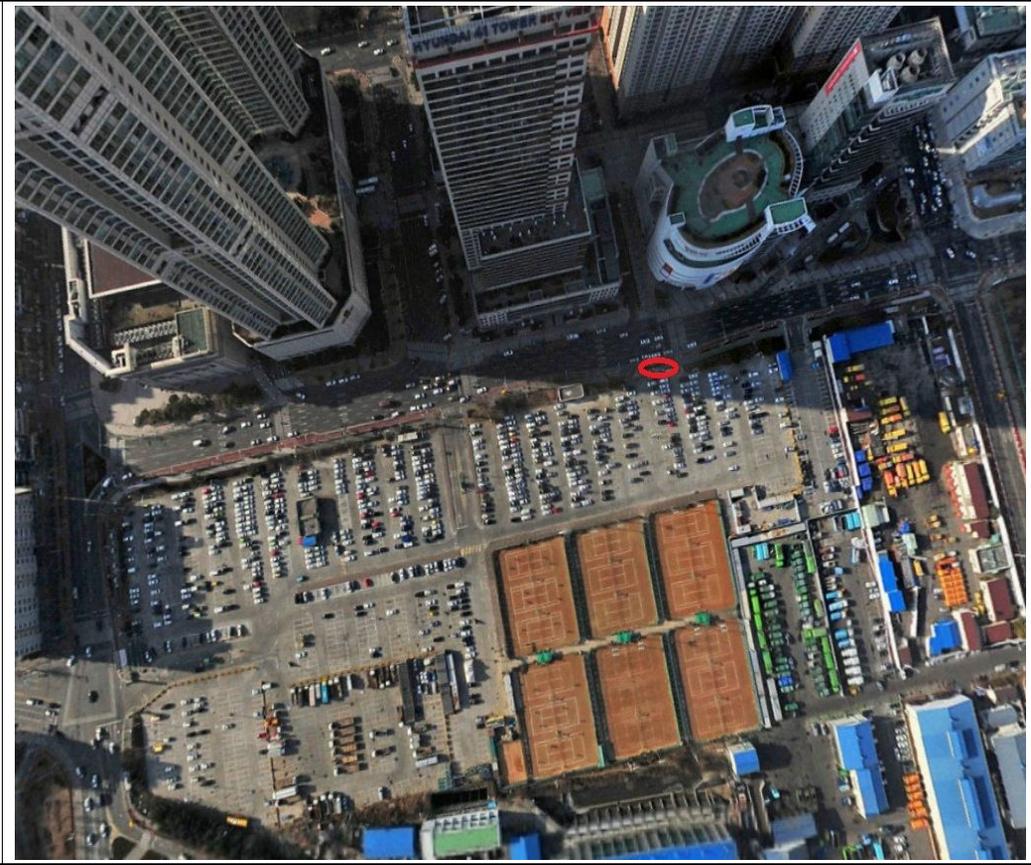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공단’과 ‘사용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어구의 해석) 허가조건에 대한 어구 해석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현수막지정계시대 위치도 및 전경

■ 행복한세상백화점(목동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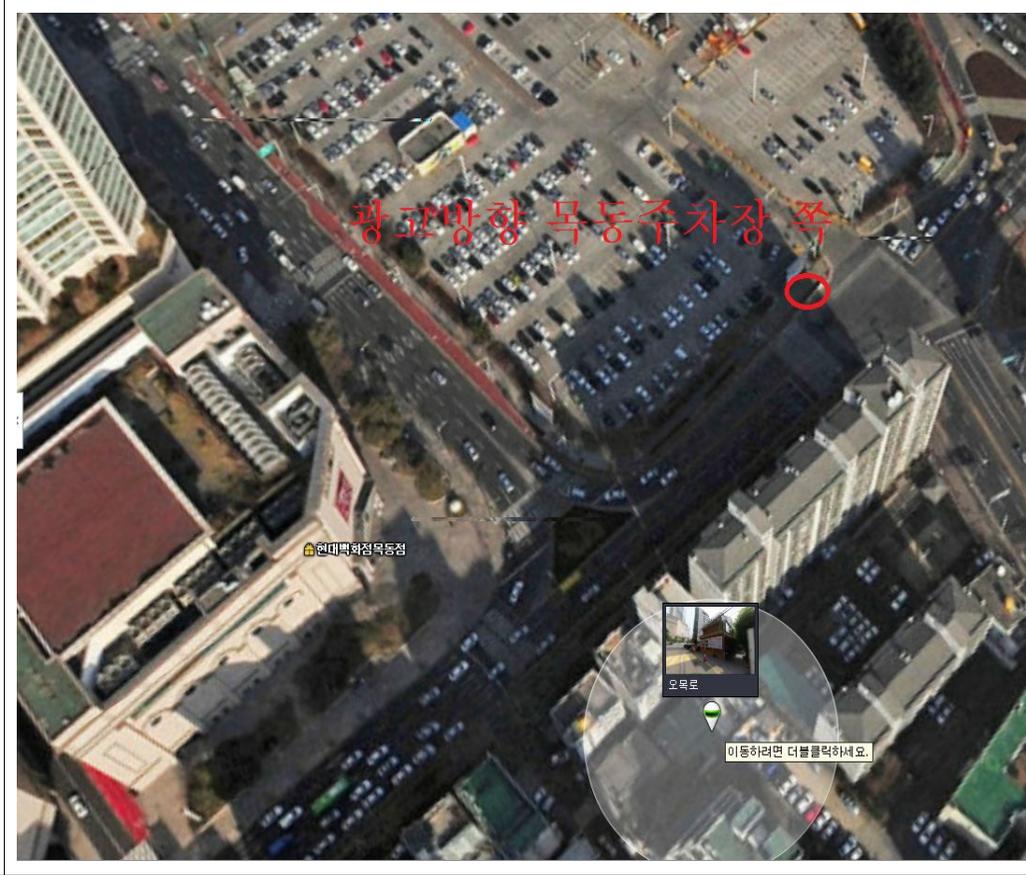
■ 양강중 앞 사거리(신월동888)



■ 목동518 양화대교 교차로 밀



■ 목동주차장 B형(목동주차장 방향), (목동915)



목동동로309 행복한세상백화점 앞



중양로319 양강중학교 앞 4거리



목동518 양화교 교차로 밀



목동915 목동주차장 앞 B형(광고면 목동주차장 방향)



